울산광역시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1605 번 호

제출연월일: 2020. 2. 11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 돌봄체계 구축 및 공동체 기반 조성을 통해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설치한 다봄행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 지법인 등에 위탁하고자.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제3 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법규

- 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 4조제3항

나. 위탁의 필요성

- 돌봄서비스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함께 돌봄센터의 효율적 운 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
- 변화와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민첩하게 받아들이고 자원연 계 등 강점이 높음
- 동일한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으며, 다양 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

다. 위탁 대상시설 및 기간

시 설 명	위 치	시설면적	위탁기간
울산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	중구 종가 3길 15 (유곡동) 중구종합사회복지관 4층	306.49 m²	2020. 3월 ~ 2022. 3월(2년)

라. 위탁사무의 범위

- 울산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시설 운영 및 관리
- 그 밖에 울산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- 마. 수탁자 선정방법: 공개모집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사
- 바. **2020년도 소요예산**: 80,000천원(국 28,080, 시 14,040, 구 37,880)

3. 추진일정

-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접수 : 3월
-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: 3월
- 위·수탁 협약 체결 : 3월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규
- 울산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시설 현황

참 고 사 항

아동복지법

[시행 2019. 7. 16.] [법률 제16248호, 2019. 1.

15., 일부개정)

제44조의2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1. 아동의 안전한 보호
-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- 3. 등 · 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
-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- 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- 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 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-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,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구청 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 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-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- 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- 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- 4. 그 밖의 시설관리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-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- ③ 구청장은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계장관 또는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④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울산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현황

□ 시설개요

- 소 재 지: 중구 종가 3길 15(유곡동) 중구종합사회복지관 4층
- 시설규모: 306.49 m²(돌봄센터192.58 m², 지역공동체공간84.22 m², 공용부 29.69 m²)
 - O 주요시설
 - (돌봄센터) 돌봄공간, 사무공간, 조리실, 화장실
 - (지역공동체공간) 북카페, 공유주방, 회의실

□ 세부내용

- 종 사 자: 센터장 1, 돌봄교사 1 * 사회복지사업법 등 자격기준에 따름
- O 이용대상: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아동
 - * 소득무관, 입소우선순위에 의함
- 운영시간: 주 5일(월 ~ 금), 1일 8시간 이상 * (학기중) 13:00 ~ 19:00, (방학중) 09:00 ~ 19:00
- O 서비스 내용: 간식지원, 학습지도, 신체활동, 특기적성 프로그램 등
- O 운영비 지원: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
- □ **2020년 예산액:** 80,000천원(국 28,080, 시 14,040, 구 37,880)

□ 향후계획

- 2020. 3.: 위탁체결
- 2020. 3.: 울산 중구 다함께 돌봄행복센터 운영